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5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운송·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주요 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운송(運送), 용수(用水)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비를 말한다.</u>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u>가격이</u>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 --- <u>가격 또는 주요 경비가</u> ----- ----- ----- ----- -----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 ----- ----- -----.

1. ~ 3. (생략)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u>조정요건</u>,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생략) ② (생략)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u> ④ ~ ⑥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3의2. (생략)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나.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주요 경비, 조정요건</u>----- -----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탁기업의 요청에 따라 위탁기업과</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 ----- ----- -----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② ~ ④ (생 략)	<u>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 청하는 행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인 ‘주요 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하며,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¹⁾되나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²⁾ 및 운송, 용수 관련 요금은 해당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운송, 용수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주요 경비’로 정의하고, 주요 경비에 대하여도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1)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9

2)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러나 실제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을 관계기관에 고지하거나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신청 또는 분쟁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제25조 제1항제14호⁴⁾에 다목을 신설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

3)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였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하려는 것임.

당초 납품대금 연동 제도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에너지 및 운송, 용수 요금 등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는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고, 거래상의 비대칭적 관계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지난 2025년 11월 13일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를 ‘주요 에너지경비’로 정의하고, 이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해당 개정법률안 논의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수 요금의 경우 그 변동성이 크지 않고, 운송비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노무비·이

운 등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용수 및 운송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의견을 고려하여 운송 및 용수 요금은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결한 바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